

교통기본법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040
----------	-------

발의연월일 : 2025. 6. 24.

발 의 자 : 윤준병 · 박용갑 · 문대림
김교홍 · 허영 · 주철현
이원택 · 송옥주 · 이춘석
민병덕 · 서영석 · 강준현
김우영 · 박희승 · 백선희
정동영 · 허성무 · 장철민
이성운 의원(19인)

제안이유

교통에 관한 현행 법체계는 교통체계의 효율성·통합성 및 연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교통체계효율화법」,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그리고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수단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으로 구성되어 국민의 교통 관련 복지에 이바지하고 있음.

그런데 지금까지 교통 관련 법의 기초는 효율성에 근거한 차량소통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사람보다는 차량 위주, 접근성보다는 이동성, 효율적인 시설관리보다는 건설 위주로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앞으로는 차량보다는 사람, 이동성보다는 접근성, 건설보다는 효율적인 시설

관리 위주로 전환되어야 할 시점임.

이에 복잡 다원화된 교통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을 통합하여 「교통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교통의 기본법으로 다른 교통관련 법의 방향을 제시하며, 총괄기능 조정 및 대응체계 개선 등 현행 법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국가는 육상·해상·항공 교통체계의 효율성, 안전성, 지속가능성 및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 전체의 교통 관련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의 교통이념을 달성하고 교통정책 기본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교통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을 구체화하는 5년 단위의 국가교통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12조).
-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쾌적하며 안전하게 교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교통권을 보장하고, 모든 국민이 신체적 장애,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지역적 사정 등에 따라 교통서비스의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14조).
-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최저교통서비스 지표 및 최저교통서비스 기준을

설정하여 고시하고 최저교통서비스 정책을 합리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통서비스의 제공 실태에 관한 조사·평가를 하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서비스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안 제18조).

바.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서비스 취약지역의 최저교통서비스 기준 이상을 달성하기 위한 교통서비스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교통서비스개선대책의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차등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사.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 교통체계 구축, 보행권 보장, 교통서비스 취약지역의 지원 등 국민의 교통권을 보장하고 교통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그 밖의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통복지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30조).

교통기본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에게 보편적이고 편리하게 육상·해상·항공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교통정책의 방향 및 교통권(交通權) 진흥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교통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있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국민경제 발전, 국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교통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의 중요한 원동력임을 인식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국민에 대한 신속하고 편리하며 합리적이고 안전한 교통서비스의 제공
2. 국민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동하기 위한 교통권의 보장 및 진흥을 위한 시책 마련
3. 적정한 교통시설 확보, 효율적인 교통운영, 교통수단 간 상호 연계 등을 통한 사람과 화물의 원활한 이동 촉진

4.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 교통체계로의 전환
5. 교통산업의 체계적인 발전과 국제협력의 증진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이란 사람 또는 화물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행위, 활동, 기능 또는 과정 등을 말한다.
2. “교통수단”이란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이용되는 보행·자전거·자동차·열차·항공기 및 선박 등을 말한다.
3. “교통시설”이란 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도로·철도·공항·항만·터미널 등의 시설과 그 시설에 부속되어 교통수단의 원활한 운행을 보조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4. “교통체계”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과 관련된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교통수단, 교통시설 및 교통운영과 이와 관련된 산업 및 제도를 말한다.
5. “교통서비스”란 사람들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을 제공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서비스를 말한다.
6. “최저교통서비스”란 국민들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교통서비스로서 제15조에 따라 설정된 최저교통서비스 기준을 충족하는 교통서비스를 말한다.
7. “교통권”이란 국민들이 보편적이고 편리하며 안전하게 육상·해상·항공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 등을 이용한 교통서비스를 제공받

아 이동할 수 있거나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교통수단을 선택하고 교통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8. “지속가능 교통체계”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사람·화물 등의 이동성과 접근성 향상 등 교통의 발전을 이루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9. “공공교통”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아래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10. “대중교통”이란 공공교통 중에서 이 법에 의한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통을 말한다. 대중교통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1. “교통기술”이란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의 개발·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12. “교통산업”이란 육상·해상·항공 교통체계의 개발·운영 및 관리 등과 관련된 모든 산업을 말한다.

13. “교통사업자”란 교통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4. “교통사업종사자”란 여객 및 물류 등 교통산업 및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육상·해상·항공 교통체계의 효율성, 안전성, 지속가능성 및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 전체의 교통 관련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교통산업이 건전하고 균등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육성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공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교통 육성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교통정책 및 계획과 조화를 이루면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교통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교통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정책 및 계획은 이 법의 목적·기본이념·교통권 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2장 교통정책의 기본방향

제6조(통합교통)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체계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육상·해상·항공 등 부문별 교통체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통합적인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수요의 산정, 교통계획의 수립, 타당성 평가, 교통시설의 확충, 교통수단의 운행, 요금 및 사용료 부과

등을 포함한 모든 교통정책을 추진할 때에 교통체계의 효율성·연계성 및 통합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교통)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교통의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공공교통을 위한 교통수단의 보급, 우선통행조치 및 교통시설의 확충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통사업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공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속가능 교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위기, 기후 변화 등 여건 변화에 대비하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교통수요의 감축, 기존 교통체계의 활용, 저탄소(低炭素) 교통수단의 보급 확대 등 지속가능 교통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교통안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의 안전 확보, 교통사고 부상자에 대한 응급구조체계 확립 등 교통안전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교통보건위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기 위하여 감염병 발생 및 위해(危害) 방지 등 교통 분야 보건위생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민간의 자발적 교통활동 촉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수요 감축, 대중교통 활성화 등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하여 국민의 교통에 대한 이해를 깊게하고 국민 스스로 지속가능 교통체계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12조(국가교통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의 교통이념을 달성하고 교통정책 기본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교통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구체화하는 5년 단위의 국가교통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
2. 교통의 수요와 공급 전망
3. 교통과 관련된 에너지소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현황 및 전망
4. 국가교통망 구축의 목표와 단계별 추진전략

5. 국가교통시설의 신설·확장 또는 정비사업
 6. 교통물류거점 및 연계수송체계
 7. 광역 교통정책 방향
 8. 도시 및 지역 내 교통정책방향
 9. 국가물류정책의 기본방향 및 단계별 추진전략
 10. 교통기술의 개발 및 활용
 1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 교통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12. 국가교통망과 다른 나라 교통망 간의 연계운영·개발 및 협력
 13. 국가교통사업의 재원조달방안과 투자우선순위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
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안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관별 계획안을 기초
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총괄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안을 작성하며, 제출된 소관별 계획안의 내용 외에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
하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이
를 반영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국가교통계획의 우선순위) 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한 교통계획에 우선하되,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한 교통계획과 중복 또는 상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교통계획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14조(교통권 보장 및 시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의 안전보장·질서유지와 복리증진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쾌적하며 안전하게 교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교통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신체적 장애,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지역적 사정 등에 따라 교통서비스의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통서비스 수준의 양적·질적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의 확충 등에 관한 사항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장 교통서비스 취약지역 지정 및 교통서비스개선대책 수립·시행 등

제15조(최저교통서비스의 지표 및 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최저교통서비스를 측정·평가·관리하기 위한 지표(이하 “최저교통서비스 지표”라 한다) 및 기준(이하 “최저교통서비스 기준”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최저교통서비스 지표 및 최저교통서비스 기준을 설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국민소득 및 생활문화 수준
2. 통행실태 및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과 이동시간
3. 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기본적 교통서비스 실태
4. 농·산·어촌 등 교통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기초적 교통서비스 공급 실태
5. 저소득층 및 교통취약계층에 대한 요금할인 현황
6. 그 밖에 최저교통서비스 지표 및 최저교통서비스 기준 설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최저교통서비스 지표 및 최저교통서비스 기준을 설정하려면 미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33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고시된 최저교통서비스 지표 및 최저교통서비스 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최저교통서비스 기준을 강화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제37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최저교통서비스 기준을 강화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국가교통서비스 조사·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최저교통서비스 정책을 합리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통서비스의 제공 실태에 관한 조사·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통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통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를 위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고 제공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교통서비스 취약지역의 지정 및 지정 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에 따른 국가교통서비스에 관한 조사·평가를 시행한 결과, 해당 지역의 교통서비스 여건이 해당 지역주민에게 최저교통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해당 지역에 대하여 교통서비스 취약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교통서비스 평가와 별도로 현저히 낮은 교통서비스 지역으로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교통서비스 취약지역으로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교통서비스 취약지역의 지원강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서비스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교통서비스 취약지역 지원을 위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9조(교통서비스개선대책의 수립·시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서비스 취약지역의 최저교통서비스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교통서비스개선대책(이하 “교통서비스개선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전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교통서비스개

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통서비스개선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서비스개선대책 대상지역의 위치 및 범위
2. 교통서비스개선대책의 기본방향
3. 최저교통서비스 기준 대비 달성 목표
4. 교통체계의 접근성 및 이동성 향상 방안
5. 대중교통수단의 운행 확충 및 서비스 향상 방안
6. 보행 및 도로환경 개선 방안
7. 교통서비스개선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財源) 확보 방안
8. 그 밖에 교통서비스개선대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서비스개선대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교통서비스개선대책 수립의 절차 및 방법, 대상지역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교통서비스개선대책 시행 결과 제출 및 평가)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9조에 따라 수립된 교통서비스개선대책의 시행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교통서비스개선대책의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30조에 따른 교통복지기금

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차등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교통서비스 취약지역의 지정 해제)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에 따른 국가교통서비스 조사·평가를 시행한 결과 교통서비스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교통서비스가 최저교통서비스 기준을 만족한다고 판단되면 해당 지역에 대하여 교통서비스 취약지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22조(수요 응답형 교통서비스 강화)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수요가 적은 농어촌, 외딴곳·오지 등에 대해서는 지역의 수요 실정에 맞도록 예약형 버스 운행 등 다양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교통산업의 육성 지원 등

제23조(교통기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을 제공하고, 미래 첨단 교통기술을 선도하기 위하여 교통기술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개발·보급·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기술을 개발할 때에는 산업계·학계·연구계 간 협동연구를 촉진하고 신기술 보호 등 유인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4조(교통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

통산업의 육성 및 교통서비스의 제고를 위하여 교통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민간참여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부문의 참여와 경쟁을 유도하여 교통서비스의 양적·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교통시설 등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개발·운영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의 참여촉진 및 투자확대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교통시설 등 교통체계를 개발·운영할 때에는 사전에 민간부문의 수행 가능성, 효율성 및 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26조(교통사업종사자의 권익보호)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교통사업자는 교통사업종사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교통권 보장과 안전을 위하여 안전운행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야 하고 그 세부적인 방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이용자의 권익보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체계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권익 침해, 불만 및 피해발생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용자 권익보호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권익보호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홍보·교육 및 연구
2.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직 활동의 지원 및 육성
3. 이용자의 명예·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
4.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공정한 구제조치
5. 그 밖에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

③ 교통사업자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8조(이용료 감면액의 보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따라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 이용자의 이용료를 감면하는 경우 해당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그 감면액을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전의 절차 및 방법, 보전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국제교통협력 증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남북 교통망 및 국제 교통망 확충 등 교통부문의 국제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국제 교통망 연결 및 운영 지원
2. 교통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3. 교통 분야 국제 표준화와 국제 공동연구개발사업 등의 지원
4. 교통 분야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5. 교통 분야 민간부문의 국제협력 지원

6. 그 밖에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의 국제협력 및 국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한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 표준화 및 국제 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교통복지기금

제30조(기금의 설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 교통체계 구축, 보행권 보장, 교통서비스 취약지역의 지원 등 국민의 교통권을 보장하고 교통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그 밖의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통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出捐金)
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세입결산분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6.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7.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제3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의 확충을 위한 지원 사업
2. 교통기술의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보급 및 그 관리사업
3. 보행권 보장을 위한 지원 사업
4. 교통서비스 취약지역의 지원을 위한 사업
5. 교통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촉진을 위한 사업
6.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3조에 따른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개발사업
7.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8. 그 밖에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32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국가교통위원회

제33조(국가교통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국가교통체계에 관한 중요 정책 등과 다른 법령에서 정한 교통 관련 정책을 심의하기 위

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국가교통위원회를 둔다.

② 국가교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중기투자계획의 수립 및 변경과 집행 실적 평가
3. 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투자재원 확보
4. 제16조에 따른 국가교통서비스 조사 계획의 수립 및 변경
5. 다른 법령에 따른 교통조사에 관한 자료의 조정
6.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조에 따른 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표 설정
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6조에 따른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 및 제38조에 따른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수립 및 변경
8.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7조에 따른 제1종 교통물류거점의 지정 및 변경
9.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0.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광역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정내용 중 중요 사항의 변경
1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수립 및 변경

1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3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기
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3. 교통체계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

1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 ·
교통체계지능화사업 또는 교통기술 연구 · 개발사업(시범사업을 포
함한다) 등 국가교통정책의 종합조정

15.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16. 그 밖에 교통체계에 관한 국가의 중요 정책으로서 위원장이 심
의에 부치는 사항

제34조(국가교통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국가교통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
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된다.

③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당연직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차관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2. 위촉위원: 교통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
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위촉위원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 관련 시민단체 및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35조(국가교통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국가교통위원회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교통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분야별 국가교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검토·조정
2. 국가교통위원회가 그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제36조(국가교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교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지방교통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소관 주요 교통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교통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교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장 보칙

제38조(국민 등의 의견 수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통계획 등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

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교통계획 또는 교통정책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국가교통계획
2. 최저교통서비스의 지표 및 기준
3. 교통서비스개선대책

제39조(국가교통 연차보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시책에 관한 국가교통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의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국가교통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교통정책방향
2.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 등 주요 교통현황
3. 분야별 국가교통의 추진된 시책과 추진하려는 시책
4. 교통서비스 취약지역의 분석 및 현황
5. 그 밖에 국가교통에 관한 중요 사항

제40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통서비스 조사·평가
2. 제20조제2항에 따른 교통서비스개선대책 시행 결과 평가

제4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통서비스 조사·평가
2. 제16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통서비스 조사·평가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3. 제20조제2항에 따른 교통서비스개선대책 시행 결과의 평가

제4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